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84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11월 03일

발 의 자: 최호정,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중화,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운,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승복,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76명)

1. 제안이유

-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려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 현행 법령과 관련 매뉴얼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를 관리하는 데 국한되어 있으며, 이번 사건과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다중운집 행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주최자가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다중운집 행사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장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및 자치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다중운집 행사에 따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 요청, 도시철도운영자에 도시철도의 무정차 통과 요청 등 시장의 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시장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경우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2. “안전 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다중이용장소”란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시경찰청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 및 행사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
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명 이상인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
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대수
7. 다중이용장소의 자체 안전 관리 인력 가동 상황
8. 지휘본부 설치·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제반 조건
9.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제6조(조치사항)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경찰청장에게 안전 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고·재난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무정차 통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장대응)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 시 시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경찰서 또는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음성과 확성기 등의 기자재를 활용한 안내, 호출, 유도, 경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시경찰청장에게 별표에 따른 군집밀도 산정방식, 공간 수용능력 및 군집 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다중운집 행사 시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6조를 준용하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군집밀도 산정 방식

- 1) 군집밀도 = 군집인수/군집의 점유면적으로 정의된다.
- 2) 군집밀도의 객관적 판단기준

군집밀도	1m ² (입석) 기준의 상태
5인	옆사람의 옷깃이 닿는 상태
6인	다리와 발을 오므리면 신체 이동이 어느 정도 가능
7인	어깨나 팔꿈치에 압력을 느낌
8인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간신히 끼어드는 정도
9인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끼어들 수 없는 상황
10인	주변의 체압(압력)에 의해 손을 올리고 내릴 수 없는 상태
11인이상	주변의 압력이 강해져서 몸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고 고통을 느낌(비명을 지르게 됨)

2. 공간 수용능력

- 1) 실내 공간에서의 1인당 최소 점유면적

의자석	좌석	입석
0.45m ² /1인	0.3m ² /1인	0.2m ² /1인

- 2) 실외 수용능력

시설(광장) 면적(m²) X 군집밀도 10인 기준 = 실외 수용 가능 인원

혼잡경비 상황에서는 건물이나 가로수 등 식물 배치를 제외한 ‘순면적’ 으로 실외수용능력을 계산해야 함

3. 군집 유동시간

- 1) 일정시간내 통과 가능 인원, 통과 가능한 출입구의 폭 등을 고려하여 산출
- 2) 군집 유동시간 산출방식

A= 군집의 총인원(명) $A=B*C*D$

B= 출입구의 폭(m) $B=A/(C*D)$

C= 매초, 폭 1미터 가량의 출구를 통과할 수 있는 인원 $C=A/(B*D)$

D= 군집 A가 출구 B를 통과할 수 있는 시간(초) $D=A/(B*C)$